

2020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0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2020. 10. 17.(토) 10:00 (※응시자 09:20까지 입실완료)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수	시험시간(분)
공개경쟁	7급	행정	일반행정	7과목	10:00 ~ 12:20 (140분간)
		시설	일반토목		
경력경쟁	7급	수업	수업	3과목	10:00 ~ 11:00 (60분간)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선박기관		
		의료기술	의료기술		
	9급 (기술계고)	공업	일반기계		
			일반전기		
		시설	일반토목		
			건축		
	연구사	해양수산	선박기관		
		학예연구	학예일반		
		수업연구	수업		
		해양수산연구	수업		
		환경연구	환경		
		공업연구	기계		
	지도사	보건연구	화학		
		보건연구	의학		
	지도사	어촌지도	어촌		

※ 장애 등 편의지원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사전 신청자에 한함)는 종료시간 연장

2. 시험장소: 붙임 「필기시험 장소」 엑셀파일 참조

※ 별도 첨부한 ‘2020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파일을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주의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학교)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
 -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하고 입과 코를 함께 가릴 수 있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 단,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니 개인별 마스크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분실 및 착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 소지를 권장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 다만,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기간 내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

〈 자가격리자 시험 신청 〉

- 신청기간 : 10.9.(금) 09:00 ~ 10.15.(목) 24:00
- 제출서류 : 자택(방문)시험 신청서, 격리통지서 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soruji@korea.kr) 제출 / (문의) 인사과 인재채용팀 (☎ 032-440-2532)
- ※ 자가격리 시험 신청자에게 시험장소 및 응시방법 등은 개별 안내
자가격리 사전신고자 중 격리해제된 경우, 일반시험실에서 시험 실시

- 증상이 의심되는 자는 사전 신고해야 하며, 사전 신고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 증상 의심자 사전 신고 〉

- 신고기간 : 10.9.(금) 09:00 ~ 10.15.(목) 24:00
- 제출서류 : 증상 의심자 사전 신고서, 코로나 음성결과 확인서 사본
- 신고방법 : 이메일(soruji@korea.kr) 제출 / (문의) 인사과 인재채용팀 (☎ 032-440-2532)
-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 증상 의심 사전 신고자에게 응시방법 등은 개별 안내(예비[별도] 시험실 등)

-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붙임4)」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시험장은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 격리대상자 응시 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장 출입구에서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수험생 교육 방송을 청취하고,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50 시험장 개방)
 -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 응시표는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 가능
 -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시험장에서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하여야 합니다. 지정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결과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를 OMR답안지에 사용할 수 없음
-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
- ※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와 **인천광역시 자체 출제 문제책**은 **비공개**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시험장 별로 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있음)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
-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종료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외부차량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경쟁시험 대상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 그간 응시자 요청 시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배변용품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 7급 공개경쟁시험 대상자는 지정된 시간(10:30~12:00, 시험시작 후 30분 이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에 1회에 한하여 화장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화장실은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 서약서 작성 및 사용 전·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험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인사과(인재채용팀 ☎ 032-440-2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5.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20. 11. 04.(수)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gosi.incheon.go.kr>]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자택(방문)시험 신청서

□ 성 명 : _____

□ 생년월일 : _____

□ 응시번호 : _____

□ 지원사항(직렬/직급) : _____

□ 주 소

○ 주민등록주소 : _____

○ 방문시험주소 : _____

※ 방문시험시 실제 방문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곳

□ 연 락 처

○ 본 인 : _____

○ 가족 등 : _____

○ 기 타 : _____

※ 필기시험 방문수험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2개 이상)

위와 같이 방문시험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20. . .

신 청 인 _____ (서명)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증상 의심자 사전 신고서

□ 성 명 : _____

□ 생년월일 : _____

□ 응시번호 : _____

□ 지원사항(직렬/직급) : _____

□ 연 락 처

○ 본 인 : _____

○ 가족 등 : _____

○ 기 타 : _____

※ 시험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2개 이상)

위와 같이 증상 의심자임을 신고합니다.

신청일자 2020. . .

신 청 인 _____ (서명)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